

(공시보고서 표지 - 공통)

## 주요 경영상황 공시

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17년 05월 04일

금융투자협회 귀중

회 사 명 : 페블스톤자산운용(주)  
(영문명) Pebblestone Asset Management Co., Ltd.  
(홈페이지) <http://www.ps-amc.com>

본 점 소 재 지 :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109 소공동 한화빌딩 7층  
(전 화) 02-2000-6805

대 표 이 사 : 황 태 웅

담 당 임 원 : (직 책) 투자운용본부장/ 상무  
(성 명) 서진교 (전 화) 02-2000-6802

작 성 자 : (직 책) 준법감시인/ 실장  
(성 명) 이나리 (전 화) 02-2000-6804

제 출 이 유 :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-59조에 의한 주요 경영상황

※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, 동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바목, 같은 항 제2호다목,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-59조에 의한 『법정공시사항』으로 그 내용에 허위,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15호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(제6-8호)

### 소송 등의 제기.신청

1. 사건의 명칭	임대금지등가처분신청 (2017카합 80612)
2. 원고·신청인	주식회사 함께
3. 청구내용	임차인이 페블스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호의 투자신탁재산인 부동산 중 일부 면적에 대한 타인의 임대등 금지 신청
4. 관할법원	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
5. 향후대책	소송대리인 선임
6. 제기·신청일자	2017.04.26
7. 확인일자	2017.05.04
8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심문기일(2017.5.17. 14:20)에 출석, 청구내용이 임차인의 부당한 요구사항임을 소명 예정

#### <기재상의 주의>

- 주1) 당해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소송(가처분 포함) 등이 제기. 신청된 사실이 확인된 때 신고한다.
- 임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및 임원의 선임.해임을 위한 소수주주의 법원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허가의 신청 등 법인의 경영사항과 관련된 분쟁
- 주2) 상기사항 외의 소송 등의 제기.신청과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.
- 주3) 당해 신고내용이 지주회사(외국지주회사 포함)의 자회사(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포함)에 대한 주요경영사항 신고의 경우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자회사명 및 자산총액비중(%)을 기재하되, 자산총액비중은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대비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주식의 최근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가액의 비중을 기재하고, 당해 사업연도중 편입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의 비중을 기재한다.